

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702호 2025. 7. 28. (월)

고시 · 공고

- 「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홍보과 ☎ 061-270-8539

「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「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7. 28.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(수수료)에서 위임한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에 반영
- 진료비 수가 적용 및 운영상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위임법령 명시(안 제1조)
 -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 추가
-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조문의 정합성 확보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3조)
 - 「지역보건법」 제14조 및 「지역보건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
 - ⇒ 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
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제4항 ⇒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
- 치석제거 진료비 요양 급여 수가 조문 삭제 및 법령에서 정한 수가 적용 근거 추가

○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법적 근거 및 금액 명시
(안 제4조, 별표 1)

3. 개정조례안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5. 관계법령

-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
- 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

6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(감사실) : 원안 동의
- 규제심사 대상 여부(기획예산과) : 해당 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(여성가족과) : 해당 없음

7. 예산사항: 해당 없음

8. 사전협의 사항: 해당 없음

9. 입법예고 기간: 2025. 7. 28.~8. 17.(21일간)

10. 의견제출

-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17일까지 목포시장(건강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처: 58714, 전남 목포시 원산로45번길 5, 목포시보건소 건강정책과
다. 제출방법: 직접방문, 우편, 팩스(061-270-8916)

11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보건소 건강정책과(☎061-270-891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역보건법」 제14조 및 「지역보건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”를 “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”로, “보건소”를 “보건소, 보건지소”로 하고, “필요한”을 “필요한 사항과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」 제5조에서 위임된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따른다”를 “따른다. 다만, 「의료급여법」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은 삭제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”를 삭제하고 “수수료는(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수 수 료 (제4조 관련)

구 분	기준	수 수 료 (원)	비 고
1. 각종 건강 진단서	1통	「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」에서 진찰료와 검사항목당 정한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	
2.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	〃	5,000	
3. 사체검안서	〃	30,000	
4. 예방접종 증명	〃	무 료	
5. 기타 각종 증명	〃	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규정한 금액	
6. 증명서 재발급 또는 추가발급	〃	1,000	온라인 발급은 무료
7. 구급차 이용	〃	무 료	
8. 건강진단 결과서	〃	3,000	「감염병예방법」 제19조 (건강진단)
9.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	〃	3,000	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」 제5조(수수료)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지역보건법</u> 」 제14조 및 「 <u>지역보건법 시행규칙</u> 」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부과·징수하는 <u>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</u> 등에 관하여 <u>필요한</u>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 (목적) ----- 「 <u>지역보건법</u> 」 제25조-----		----- 보건의소, 보건지소-----
		----- <u>필요한</u> 사항과 「 <u>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</u> 」 제5조에서 위임된 ---.		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	제2조 (정의) -----		
1. “진료비”란 「 <u>국민건강보험법</u> 」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에 포함된 진료비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(이하 “요양급여”라 한다) 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(이하 “비 요양급여”라 한다)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.		1. ----- 「 <u>국민건강보험법</u> 」 제45조에 따라 -----.		
2. (생략)		2. (현행과 같음)		
제3조 (진료비의 부과·징수) ① 시장은 진료를 실시하고 부과·징수하는 진료비에 대하여는 보		제3조 (진료비의 부과·징수) ㊦-----		

건복지부장관이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「건강보험 요양 급여 기준」에 따른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 요양급여대상 의약품에 대한 약제비에 대하여는 실구입가로 부과·징수하되, 치과진료비 중 치석제거 진료비는 1회당 30,000원으로 하고, 복합레진(전치부) 진료비는 1치아당 30,000원으로 한다.

제4조 (수수료의 부과·징수) ① (생략)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·징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“별표1”의 기준으로 한다.

1. 각종 건강진단서

2.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

3. 사체검안서

4. 기타 각종 증명서

따른다. 다만, 「의료급여법」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.

② <삭 제>

제4조 (수수료의 부과·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----- 수수료는(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」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) -----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□ 조 례 명: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